의 안 번 호

1395

【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】

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9. 28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29.(금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0. 13.(금)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 요 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에 "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"을 수립하 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6건(취득 5건, 관리계획 변경 1 건)으로 70.108.143천원임

가. 취득내역 : 5건 67,708,143천원

- 1) 서덕출 아트리움(복합문화공간) 조성
 - 토지매입 324㎡, 건축연면적 321.36㎡(지상3층) / 3,100백만원
- 2) 다운역사공원 조성
 - 토지매입 55,663㎡, 건축연면적 325㎡ / 9,800백만원
- 3) 우정동 주민센터 건립
 - 토지매입 1.119㎡, 건축연면적 1.485.25㎡(지상4층) / 6.286.353천원
- 4)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
 - 토지매입 31,614㎡ / 30,521,790천원
- 5)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
 - 토지매입 3,816㎡, 건축연면적 3,600㎡(지하1, 지상2) / 18,000백만원

나. 관리계획 변경 : 1건 2,400,000천원

- 1)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
 - 토지매입 20,043㎡ / 2,400백만원 ※ 당초 14,258㎡ 1,600백만원

4.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세부내역

서덕출 아트리움(복합문화공간) 조성

가. 주관부서 : 문화관광실

나. 취득 재산현황

O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188-11 등 2필지

○ 취득재산 : 토지매입 324㎡, 건축연면적 321.36㎡(지상 3층)

O 용도지역: 일반상업지역

○ 총사업비 : 3.100백만원(토지 820 건물 260 공사비 등 2.020)

다. 취득사유

O 한국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스토리하 우스를 조성하여 우리고장 인물을 널리 알리고,

○ 2019 올해의 관광도시 테마인 "아틀리에 도시 만들기"와 연계하여 원도심 유휴공간에 문화와 소통·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복합거 점을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 및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 고자 함

라. 사업기간 : 2018. 1월 ~ 12월

② 다운역사공원 조성

가. 주관부서 : 문화관광실

나. 취득 재산현황

O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 148번지 등 14필지

○ 취득재산 : 토지매입 55,663㎡, 건축연면적 325㎡

O 용도지역: 자연녹지지역, 공원

○ 총사업비 : 9,800백만원(토지 3,500 공사비 5,400 용역비 등 900)

다. 취득사유

- 청동기시대부터 다양한 시대의 고분군이 분포된 지역으로 경작활동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손상과 역사적 자원의 유실 우려 및 대상지 주변부로 토지 훼손이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.
- O 이 지역의 역사·문화적 자원을 보존하고 주변 녹지환경 개선 및 고 분군과 차(茶)를 테마로 하는 다운역사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함

라. 사업기간 : 2018년 ~ 2023년(6년)

③ 우정동 주민센터 건립

가. 주관부서 : 총무과

나. 취득 재산현황

O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77-18 등 11필지

○ 취득재산 : 토지매입 1,119㎡, 건축연면적 1,485.25㎡(자상4층)

O 용도지역: 제2종일반주거지역, 일반미관지구, 공공청사

○ 총사업비 : 6,286,353천원

(토지 3,390,310 건물 2,806,343 기타 89,700)

다. 취득사유

- O 현 청사 건물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하고 열악한 행정사무 및 편의공 간 부족으로 공공서비스 불편이 가중되고,
- O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신청사 건립으로 고품 격 행정 서비스 제공 및 변화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함

라. 사업기간 : 2018년 ~ 2020년(3년)

④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

가. 주관부서 : 총무과

나. 취득 재산현황

O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139번지

○ 취득재산 : 토지매입 31.614㎡

○ 용도지역 : 공공청사

○ 총사업비 : 30,521,790천원(토지매입비)

다. 취득사유

- O 혁신도시내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업무 협업 및 신청사를 거점으로 행정타운화하고,
- O 다운동 공동주택사업, 장현동 첨단산업단지,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변화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함

라. 사업기간 : 2018년 ~ 2022년(5년간 분할 매입)

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

가. 주관부서 : 평생교육과

나. 취득 재산현황

○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58-8번지 등 3필지

○ 취득재산 : 토지매입 3,816㎡,

건축연면적 3,600㎡(지하 1층, 지상 2층)

O 용도지역: 제2종일반주거지역

O 총사업비 : 18.000백만원(토지 6.583 건물 10.831 기타 586)

다. 취득사유

O 울산시립미술관의 원도심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시립미술관, 동헌 등 과 연계하여 중부도서관을 이전 건립하고자 함

라. 사업기간 : 2018년 ~ 2020년(3년)

⑥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변경

가. 주관부서 : 공원녹지과

나. 취득 재산현황

O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10번지 등 11필지

○ 취득재산 : 토지매입 20,043㎡ **※ 당초** : 14,258㎡

O 용도지역: 자연녹지지역

○ 총사업비 : 2,400백만원(토지매입비) ※ **당초** : 1,600백만원

다. 취득사유

O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입화산 참살이숲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산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라. 사업기간 : 2016년 ~ 2018년(3년)

5. 근거법규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39조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1조

6. 검토의견

- O 본 계획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계획에 의하면 서덕출 아트리움 조성 31억원, 다운 역사공원 조성 98억원, 우정동 주민센터 건립 628,635만원,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 3,052,179만원,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180억원,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24억원으로 총 7,010,81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,
- O 그 중 국비 867,000만원으로 12.4%, 시비 541,500만원으로 7.7%, 구비 5.602,314만원으로 79.9%를 차지하고 있음. 이에 따른 향후 예산확보 방

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

근 거 법

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~ 5. (생 략)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- 7. ~ 11. (생략)
- ② (생 략)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(약칭: 공유재산법)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· 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 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~ ⑤ (생 략)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(약칭: 공유재산법 시행령)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 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 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 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 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 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<mark>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</mark>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

토지

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1. 사업목적 및 용도
- 2. 사업기간
- 3. 소요예산
- 4. 사업규모
- 5. 기준가격 명세
- 6. 계약방법
- ③ (생략)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1. ~ 2. (생략)
-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
- 4. **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**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하다.
- ⑤ (생략)
-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1건"이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같은 취득·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
- 2.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 득·처분하는 경우
- 3.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
- 4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
- 5. 해당 재산에 인접(隣接)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6. 분필(分筆)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·운 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7.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⑦ (생략)

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- 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 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.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
 -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 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